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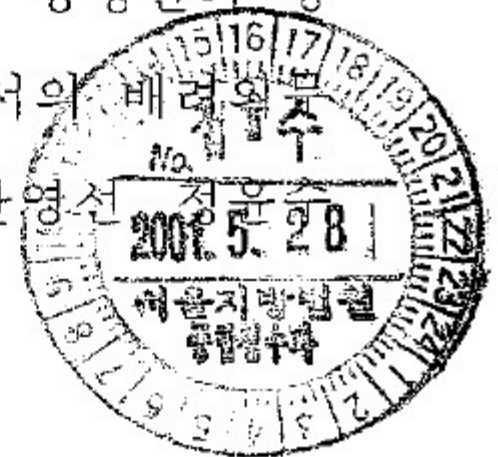
사 건 2001나25718 손해배상(가)
원고, 피항소인 서승연 외 4인
피고, 항 소 인 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변론 및 증거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변론(항소이유)을 준비합니다.

아래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①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의무와 안내요원의 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서승연, 김지수, 강정환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또 ② 부재자투표제도 등의 운영에 있어서의 배려위반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보호자가 없는 원고 한영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2.1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의무와 안내요원의 배치 의무에 관하여

원심 판결은, 피고는 투표소로 선택된 장소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 되어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피고는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선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투표소로 선택된 장소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 되어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피고는 장애인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나 설비를 임시로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의 국가 재정상 불가능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또 ② 피고는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③ 장애인을 위한 안내요원을 배치하되 장애인이 투표하러 올지, 온다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투표소 종사원의 한정된 인원 때문에 투표소 외부에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두지 않고 장애인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족하다고 봅니다. 투표하러 오는 장애인 스스로 보조자를 대동하고 오든지, 그럴 형편이 되지 아니하면 투표소 입구에 도착하여 다른 투표자를 통하여 투표사무종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원고 서승연 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결은, 원고 서승연은 인바, 해당 투표소는 2층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층에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동 원고와 투표소에 동행한 아버지가 2층 투표소로 올라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투표소를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한 문제를 두고 그 아버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동 원고는 투표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한 뒤에 그 결과 그 선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호자인 아버지와 함께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마당까지는 이르렀으나, 그 아버지는 2층 투표소에 올라와 선거관리위원회측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투표소를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한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소란을 피웠고¹⁾, 원고 서승연 스스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을 가지고 선거권을 침해당하였다고 결론지은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동 원고는 투표소가 1층에 설치되었던 1998. 6. 4. 실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도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바(을 제1호증의 1), 이 건은 마치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을 핑계로 국가를 상대로 이 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1) 원고 서승연의 아버지는 2층 투표소에 올라와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는 원고 서승연을 투표소로 올라오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도우미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그 어머니가 "서승연은 이 번 투표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미 차에 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만류하여 내려가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갑 제14호증의 3, 4쪽).

를 송부하여 주는 등으로 부재자투표제도 등의 이용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여 그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중증장애인이고 그에게 등록된 보호자가 없다고 하여 피고가 직접 그러한 원고에게 부재자신고서식(을 제5호증의 7)과 부재자투표제도 등에 대한 안내서를 따로 송부하여 주어야 할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소 투표제도는 법률에 정하여진 제도로서 신문광고, 방송 보도, 신문기사, 반회보, 인터넷홈페이지, 관보 등에서 부재자투표제도를 상세히 광고 안내하였으므로(을 제10호증의 1), 또다시 안내서를 송부하여 줄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거소 투표³⁾를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또는 보호자 등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신고 서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소투표를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보호자가 없는 등록장애인들을 찾아가 일일이 부재자신고서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3.2 원고 한영선, 정윤수 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결은 원고 한영선, 정윤수는 행정관청에 등록된 중증의 신체장애인으로서는 달리 등록된 장애인이 없음에도 위 원고들에게 부재자투표제도 등

3) 거소투표를 위하여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잘못 이용되는 경우에는 투표지의 매매나 대리투표가 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아주 위험한 제도입니다.

에 대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 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그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원고 는 1998. 6. 4.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에는 투표에 참여한 바가 있고(을 제8호중의 5, 을 제9호중의 3), ② 원고 한영선은 장애인 등록시에는 보호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게는 부모가 생존하고 있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에는 자신은 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부모는 인근인 같은 동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같은 동 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을 제8호중의 1 내지 4), 이는 장애인 수당 등을 받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에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③ 원고 에게는 형제자매가 있고, 주민등록상 그들과 같은 곳에서 동일 번지 세대를 구성하여 기거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아(을 제9호중의 1, 2) 장애인 수당 등을 받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에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4. 결론

현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여 이 배려의 부족이 곧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 서류 및 첨부 서류

1. 을 제7호증(강정환 주민등록표등본)
2. 을 제8호증의 1, 2, 3, 4, 5(한영선 주민등록표등본)(한영선 부모 주민등록표등본)(한영선 주민등록표초본)(제적등본)(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3. 을 제9호증의 1, 2, 3(정윤수 주민등록표등본)(정윤수 모 주민등록표등본)(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4. 을 제10호증의 1(부채자신고 안내 홍보 실적)
5. 준비서면 부분 1통

2001. 5. 2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장

담당변호사 권 광



서울지방법원 제4민사부 귀 중